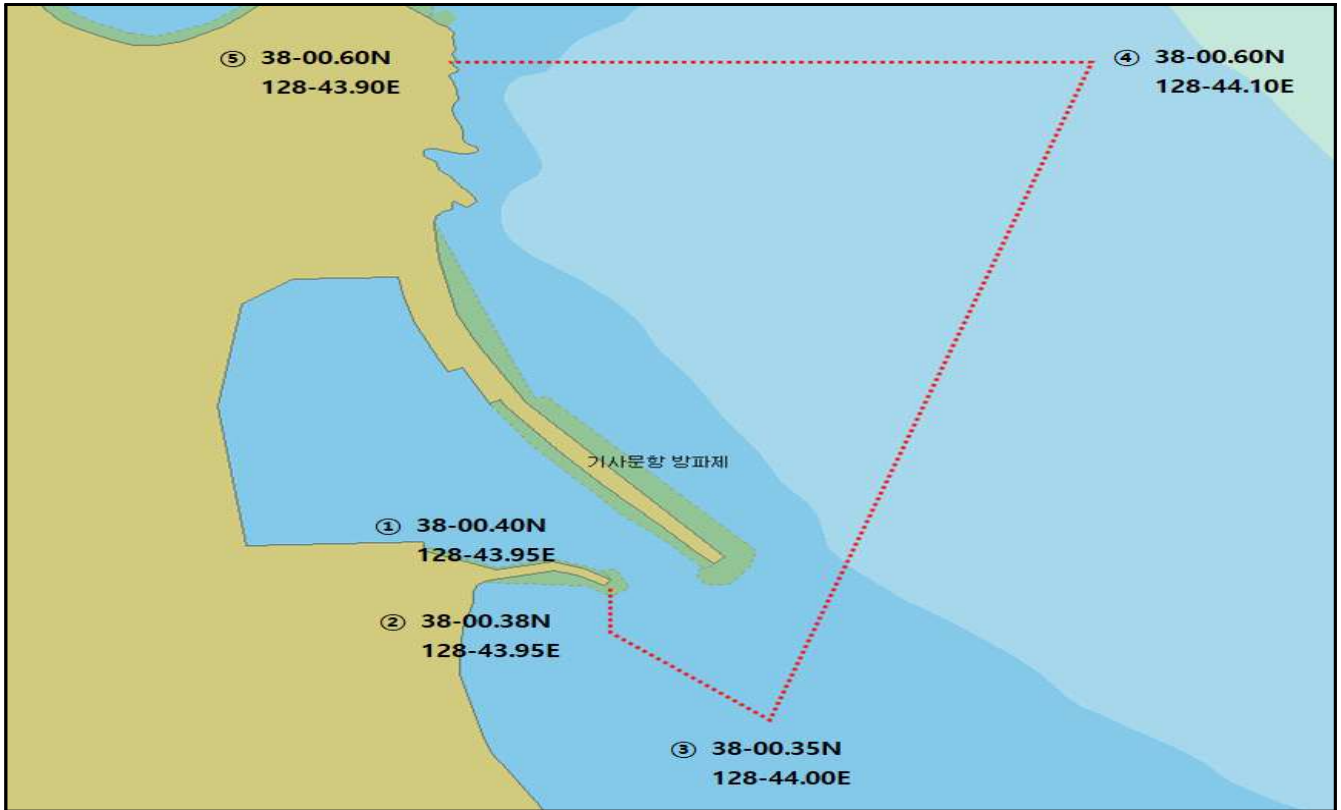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기사문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기사문항 고시수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정남 180°방향으로 60m 이동한 점에서 남동 115° 방향으로 100m 이동한점, 이점에서 북동 15° 방향으로 470m 이동한점, 이점에서 정서 270° 방향으로 육지부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8도 00분 24초 동경 128도 43분 57초 (북위 38도 00.40, 동경 128도 43.95)
2. 북위 38도 00분 23초 동경 128도 43분 57초 (북위 38도 00.38, 동경 128도 43.95)
3. 북위 38도 00분 21초 동경 128도 44분 00초 (북위 38도 00.35, 동경 128도 44.00)
4. 북위 38도 00분 36초 동경 128도 44분 06초 (북위 38도 00.60, 동경 128도 44.10)
5. 북위 38도 00분 36초 동경 128도 43분 54초 (북위 38도 00.60, 동경 128도 43.90)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동산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동산항 고시수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남동 135°방향 1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동 90°방향 1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북 00°방향 35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서 280°방향으로 육지부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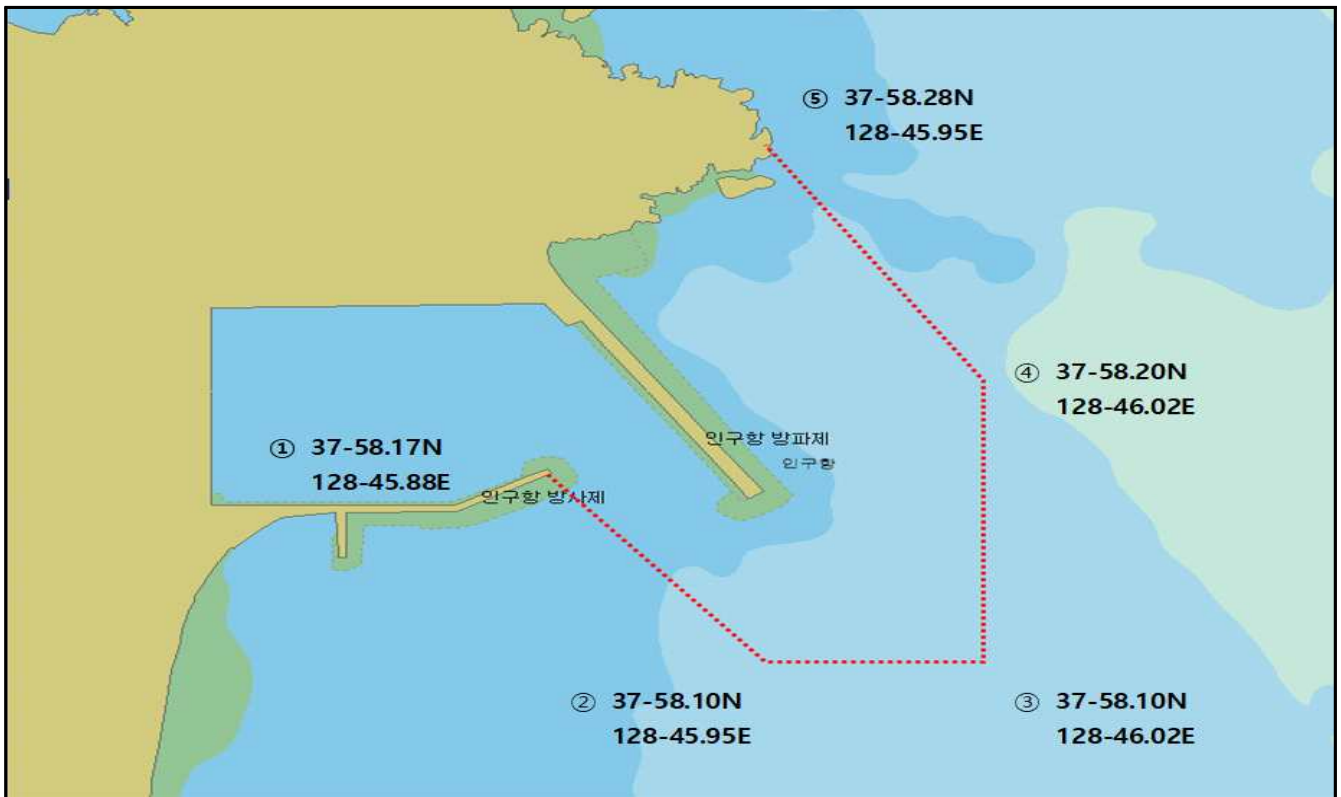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8분 42초 동경 128도 45분 46초 (북위 37도 58.70, 동경 128도 45.77)
2. 북위 37도 58분 39초 동경 128도 45분 51초 (북위 37도 58.65, 동경 128도 45.85)
3. 북위 37도 58분 39초 동경 128도 45분 55초 (북위 37도 58.65, 동경 128도 45.92)
4. 북위 37도 58분 50초 동경 128도 45분 55초 (북위 37도 58.83, 동경 128도 45.92)
5. 북위 37도 58분 52초 동경 128도 45분 46초 (북위 37도 58.87, 동경 128도 45.77)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인구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인구항 고시수역]

남방파제 기점에서 남동 145°방향 16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동 90°방향 1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정북 00°방향 200m 이동한 점, 이 점에서 북서 325°방향으로 육지부를 연결한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8분 10초 동경 128도 45분 53초 (북위 37도 58.17, 동경 128도 45.88)
2. 북위 37도 58분 06초 동경 128도 45분 57초 (북위 37도 58.10, 동경 128도 45.95)
3. 북위 37도 58분 06초 동경 128도 46분 01초 (북위 37도 58.10, 동경 128도 46.02)
4. 북위 37도 58분 12초 동경 128도 46분 01초 (북위 37도 58.20, 동경 128도 46.02)
5. 북위 37도 58분 17초 동경 128도 45분 57초 (북위 37도 58.28, 동경 128도 45.9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남애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남애항 고시수역]

북방파제 기점에서 양지도를 경유한 600m점(해상), 이점에서 70° 방향으로 연결하는 선을 따라 형성된 공유수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6분 42초, 동경 128도 47분 19초 (북위 37도 56.70, 동경 128도 47.32)
2. 북위 37도 56분 27초, 동경 128도 47분 35초 (북위 37도 56.45, 동경 128도 47.58)
3. 북위 37도 56분 22초, 동경 128도 47분 21초 (북위 37도 56.37, 동경 128도 47.35)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주문진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주문진항 고시수역]

주문진리 동단에서 남단으로 그은 선내의 해면

(- 선 내측수역)

1. 북위 37도 53분 41초, 동경 128도 50분 05초 (북위 38도 53.68, 동경 128도 50.08)
2. 북위 37도 53분 12초, 동경 128도 50분 10초 (북위 37도 53.20, 동경 128도 50.17)
3. 북위 37도 53분 04초, 동경 128도 50분 14초 (북위 37도 53.07, 동경 128도 50.23)
4. 북위 37도 52분 44초, 동경 128도 50분 05초 (북위 37도 52.73, 동경 128도 50.08)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사천진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사천진항 고시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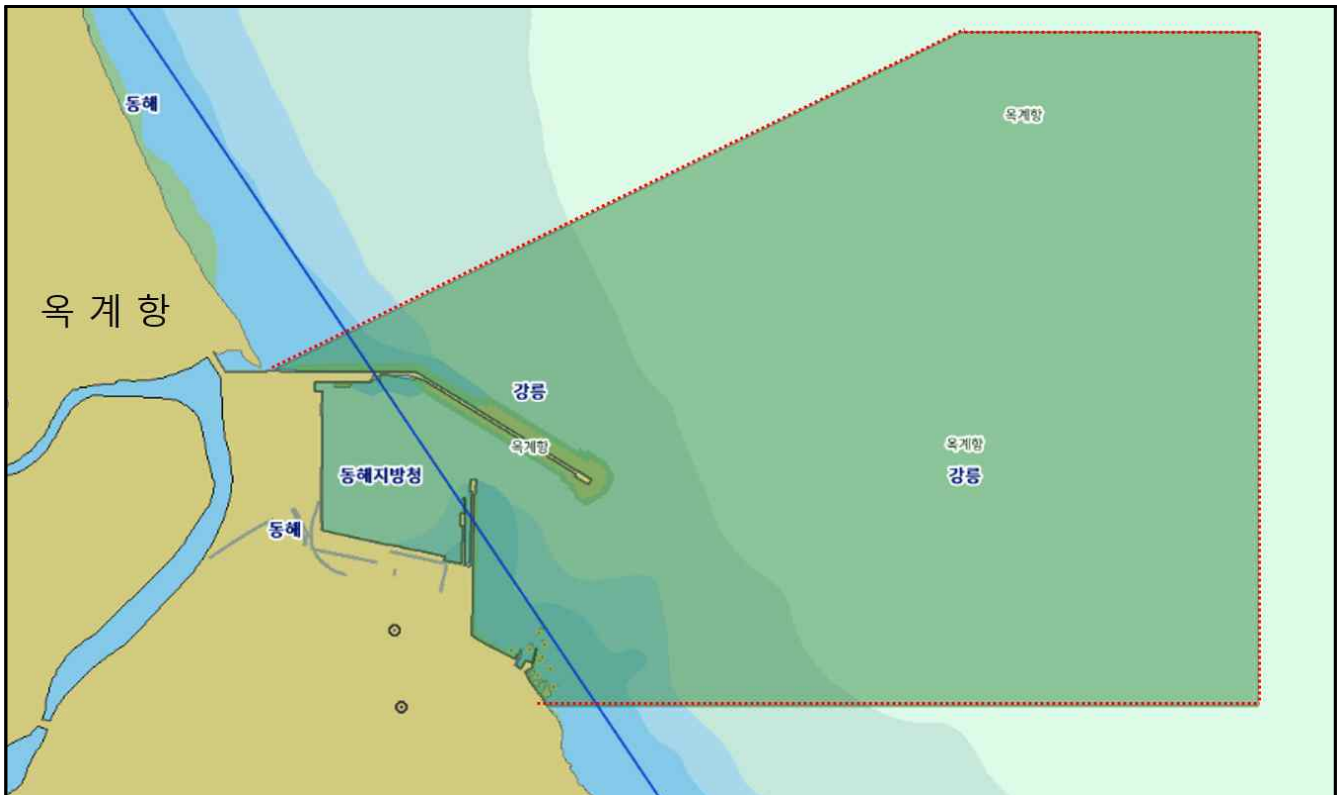
사천진항 북방파제 끝단(확장공사완공기준)과 내측방사제 끝단 및 외측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선 내측수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옥계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옥계항 고시수역]

주수천 하구의 북방파제 서단에서 진방위 65도 연장선상 2,550미터 지점,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8분 10.09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 용바위 남단으로부터 진방위 90도로 북위 37도 36분 58.10초, 동경 129도 05분 21.75초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선 내측수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강릉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5조(해양레저활동의 허가)

[강릉항 고시수역]

강릉항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면
(— 선 내측수역)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밖의 유락 행위